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2.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2.25.

다. 상정일자 :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3.6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조만호】

### 가. 개정이유

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○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신설(안 제18조)

- 심의사항: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,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

- 위원회 구성: 위원장(부구청장) 포함 10명 이내
- 기 타: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, 위원 수당 지급 근거 등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 
위원회 심의사항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,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며,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하며, 기타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, 위원 수당 지급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검토의견으로는  
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
- 관련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9조(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조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